

경쟁제한적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향방

주 현

(연구위원 · 중소기업실)

juhyeon@kiet.re.kr

〈요 약〉

중소기업정책이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중소기업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쟁정책과 친화적이다.

그러나 모든 중소기업정책이 경쟁정책과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 지원제도로는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 및 단체수익계약제도가 있다.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금년 내에 제도폐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 역시 실효성을 많이 상실하였으며 2006년 말에 제도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단체수익계약제도는 해당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강력한 보호장치가 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도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경쟁제한적 중소기업정책이 이처럼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조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으로부터 차단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시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연·악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내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책이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 까닭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중소기업정책이 시장과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과잉 보호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정책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경제체제의 버팀목으로 확고히 자리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1. 중소기업정책과 경쟁

중소기업정책이 대기업과의 경쟁으

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중소기업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쟁정책과 친화적이다. 중소기업은 그 자체로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중소기업정책은 경쟁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쟁정책과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그러나 모든 중소기업정책이 경쟁정책과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1970~80년대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을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1990년대 이후 경쟁제한적 성격을 갖는 중소기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폭넓게 확산되었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경쟁제한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으르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해당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당하지만, 이따금 중소기업정책 전체가 경쟁과 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인

양 오해되고 비판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은 경쟁정책과 본질적으로 조응되며, 경쟁정책과 배치되는 사례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현재 시행되는 경쟁제한적 중소기업 지원제도로는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제도의 운용실태, 평가, 정책방향 및 최근 정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이미 축소 운영되어 왔으며 조만간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2.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

(1) 운용실태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특정 업종 및 품목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탁기업의 생산을 제한하여 수탁기업에 이양토록 권고하며 위·수탁기업간에 장기적·안정적으로 위·수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정계열화 업종을 영위하는 위탁기업은 지정계열화 품목의 제조를 수탁기업에 위탁하여야 하며, 지정계열화 품목을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업과 장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제도는 1975년에 시작되었으며,

1984년에 44개 업종, 1,553개 품목으로 지정 업종 및 품목이 최고 수준에 달한 이후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1980년대 지정 내역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계열화 업종으로 24개, 계열화 품목으로 838개가 지정되어 있다.

(2) 평가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위탁기업마다 소재에서부터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추는 것보다는 부품 등을 수탁기업으로부터 조달토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부품 등의 전문생산체제를 확립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업화 초기 단계인 1960년대 초에는 도급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도 중요시되지 않았다. 1970년대 들어서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가 시도되면서 최종 조립 부문의 대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간재 산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는 산업연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업간 연관관계를 높이는 문제였으며, 기업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연관을 높이는 문제, 즉, 계열화를 확산시키는 문제였다. 하도급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열화를 통

해 기업간 분업이 갖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수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문화와 경영안정화, 위탁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 심화 현상을 완화하는 시책이 요구되었다.

이같이 중공업화의 추진과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라는 맥락에서 1975년 정부는 그 동안 실시해 온 계열화 시책을 법제화하여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계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계열화 정책의 핵심이다.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도급관계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수탁 중소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전자 등 대규모 조립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의한 분업관계가 확산되었다. 중소 제조업체의 수급기업 비율을 보면 1980년의 30.0%에서 1991년에는 73.6%까지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수급기업 비율은 60.0%를 상회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가 이렇게 확대된 데에는 계열화 촉진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 보면 대기업이 지정계열화 품목을 생산할 여지가 많이 허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대기업이 지정 당시 생산하던 지정계열화 품목의 경우 신고만 하면 계속 생산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둘째, 수탁기업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이 낮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생산이 허용되며, 셋째,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대기업이 신규로 생산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더욱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지정계열화 품목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0년대 말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대기업이 지정계열화 품목을 생산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부품 조달의 글로벌화로 중국 등 저임금 지역에서 수입이 자유롭게 된 점은 동 제도를 완전히 무용화시켰다.

(3) 정책방향

우리 경제의 수준으로 볼 때 단순한 하도급거래의 확대는 더 이상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또한, 특정 업종이나 품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산

업을 육성한다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적 수단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도 낡은 것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이런 측면에서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적절한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며 적절한 정책 수단에 의거하고 있지도 못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환경의 변화로 동 제도의 효과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기본적으로 쌍방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확대·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해 정부의 인위적 조직화와 정책적 인센티브가 주된 역할을 해 왔으나 앞으로 협력은 양자간의 자율적 이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부는 협력의 인위적 조직이나 협력에 대한 개입보다는 환경 조성자 및 이해 조정자로서 기능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환경의 개선과 양자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최근 정책동향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보호제도인 동 제도를 2004년까지 운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¹⁾

다만, 현 단계 우리 경제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간 자발적 협력 동기에 유인을 부가하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대안이 낡은 계열화 촉진 제도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

(1) 운용실태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는 특정 사업영역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금지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을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1979년에 23개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한 이래 1983년 103개 업종, 1984년 205개 업종, 1989년 237개 업종으로 지정 시마다 업종 수가 크게 증대하였다. 그런데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준다는 효과가 있으나, 해당 중소기업을 과보호함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1989년부터 해제예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989년을 정점으로 고유업종 수가 감소하여 1994년 58개 업종, 1995년 45개 업종, 1997년 47개 업종을 해제하였으며, 2001년에도 43개 업종을 해제하여 현재 45개 업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2) 평가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1980년대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

〈표 1〉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 추이

단위 : 개

	1979	1983	1984	1989	1994	1995	1997	2001
신규지정업종	23	103	104	49	-	-	-	-
해제업종	-	-	2	17	58	45	47	43
고유업종	23	103	205	237	179	134	88	45

자료 : 중소기업청.

1) 재정경제부 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경제민생점검회의 안건, 2004. 7. 7.

된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된 사업영역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업종에 따라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지정이 장기화되어 대기업의 참여를 오랫동안 제한함으로써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노력을 저하시켜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수입증대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제도는 고유업종 지정 전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의 계속 생산은 허용하지만 신규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 대기업에만 독과점적 시장성과를 보장해 주는 불합리한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WTO 체제 성립 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후발개도국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진입을 막는 동 제도의 실효성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정책방향

정부주도형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시장주도형 선진국 경제로 발돋움하면서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시책의 활용가능성은 크게 제약받고 있

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가 성립된 이후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세계화되면서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동 제도의 유효성마저 상실된 형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고려하여 해제예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며,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품목은 정부 조달에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해제가 해당 중소기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급격한 구조조정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최근 정책동향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가 경제여건 변화 및 지정기간의 장기화로 실효성이 저하되었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음에 따라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의 폐지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0년 7월 21일 규제개혁위원회도

<표 2>

중소기업고유업종 연도별 해제계획 조정(안)

	당 초 계 획	수 정 계 획
1단계 해제 (2004. 12. 31)	20개 업종	8개 업종
2단계 해제 (2005. 12. 31)	25개 업종	19개 업종
3단계 해제 (2006. 12. 31)	-	18개 업종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고유업종을 2005년 이내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2003년 중소기업청은 현존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한 해제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그 내용은 1단계로 2004년 말에 고무장갑 등 20개 업종을, 2단계로 2005년 말에 국수 등 25개 업종을 해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03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계는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15개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존속시켜줄 것을, 9개 업종에 대해서는 해제시기를 연기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업계의 건의를 고려하여 정부는 해제 예시 기간을 1년 연장하여 1단계로 2004년 말에 8개 업종을, 2단계로 2005년 말에 19개 업종을, 2006년 말에 18개 업종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업계가 존속을 요청한 15개 업종은 3단계로 2006년 말에 해제토록 하였고, 해제 연기를 요청한 9개 업종은 해제시기

를 1단계씩 연장하였다.

이렇게 되면 2007년 이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며 이는 곧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4.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

(1) 운영실태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을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하는 제도로서 1965년에 도입되었다.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수는 1983년 1,474개에 이르렀으나, 이후 매년 축소되어 2004년에는 138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참여조합 수 및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170개 조합에 1만 3,00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납품실적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에 4조 8,918억원

에 상당하는 물품이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조달되었다.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6.6%,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0.4%에 해당된다.

(2) 평가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는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정에서 동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계약물량의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즉,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품질향상 노력이 미흡하고 동 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동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계약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특정 기업에 편중 배정, 연고 배정, 생산설비 미비업체에 배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상위 20%인 2,600여 중소기업이 2003년 연간 총 납품금액의 77.3%인 3조 7,800억여원을 납품하고 있어 소수의 중소기업에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제도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

점들은 동 제도가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동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경쟁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3) 정책방향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지원은 향후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갖는 경쟁제한적 성격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동 제도는 축소·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가 국제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다. 1997년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동 협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받았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OECD의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에 따라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OECD 각료이사회는 경성 카르텔 금지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행위를 OECD가 규정한 경성 카르텔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논의는 WTO 혹은 OECD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경쟁제한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때문에 축소·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 제도의 축소·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고, 일정액 이하 정부조달시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시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최근 정책동향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제도 자체의 존폐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는다.

지난 7월 초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단체수의계

약제도는 급격한 판로축소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²⁾

이어 7월 말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으며,³⁾ 감사원은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⁴⁾

이러한 정책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수년 내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새로운 전개

이상으로 경쟁제한적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 및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를 살펴보았다.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며 금년 내에 제도폐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 역시 실효성을 많이 상실하였으며 2006년 말에 제도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2) 재정경제부 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경제민생점검회의 안건, 2004. 7. 7.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 2004. 7. 22.

4) 감사원,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도자료, 2004. 7. 22.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는 해당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강력한 보호장치가 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도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경쟁제한적 중소기업정책이 이처럼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조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으로부터 차단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시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연·악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내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책이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 까닭도 있다.

경쟁제한적 중소기업정책을 전면 개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므로 상기 세 가지 제도는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정책이 시장과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과잉 보호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정책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경제체제의 버팀목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